

의안번호	2202457
의 퇴 인	윤건영의원
회 답 일	2024. 10. 2.
추계번호	24D2434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구성일로부터 최대 6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자문기구를 두며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3,200만원, 2032년 4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총 49억 4,100만원(연평균 7억 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조~제6조)	668	665	675	687	699	711	311	4,417	631
자문기구의 설치 (안 제14조)	64	64	64	64	64	64	—	384	55
종합보고서의 작성 (안 제24조)	—	—	—	—	—	—	140	140	20
추가재정소요	732	729	739	751	763	775	451	4,941	70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함(제1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은 1회를 넘을 수 없음(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제1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2항)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자문기구의 설치)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제1항)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7조(진상 규명의 신청)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 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제2항)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8	안 제20조(진상 규명 조사개시)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제1항)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음(제2항)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9	안 제21조(진상 규명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23조(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각하, 제20조에 따른 조사개시, 제2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7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항)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제3항) -그 밖에 통지의 대상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24조(보고 서의 작성)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항)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2	안 제25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도비 건립 및 추도시설 등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제1호) ·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제2호) ·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제3호) ·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 사업(제4호)	재량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	○	—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3	안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4	안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5	안 제13조(사무국의 설치)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인력,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6	안 제14조(자문기구의 설치)	○	—
7	안 제17조(진상규명의 신청)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출석, 위원회의 실지조사 등에 따른 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그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8	안 제20조(진상규명 조사개시)		
9	안 제21조(진상규명 조사방법)		

10	안 제2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문자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지의 대상·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정이 곤란함
11	안 제24조(보고서의 작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제6조), 자문기구의 설치(안 제14조),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4조)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함
- 상임위원(3명)의 인건비의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인 상임위원(1명)에게는 장관급, 나머지 상임위원(2명)에게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적용
-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6명의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준용하여 1회당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회의는 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와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소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준용하여 1회당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회의는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수 및 자문수당(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비)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수 등을 준용하여 총 40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수당은 1회당 40만원으로 하며,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보고서 작성·발간 경비는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내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¹⁾의 종합보고서 작성·발간비용을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제정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6년간 진상 규명 활동을 할 수 있고, 안 제24조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²⁾,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³⁾⁴⁾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⁵⁾을 적용
- 임차료 및 기본경비는 사무국의 조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3.22.제정)」에 따라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3.5.제정)」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2018.6.18.제정)」를 통합하여 발족('10.4.20.)되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임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2.6%	2.2%	2.2%	2.1%	2.1%	2.1%	2.0%	2.0%	2.0%

3)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7.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7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기관부담금	13.11%	13.21%	13.31%	13.40%	13.49%	13.58%	13.58%	13.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7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	4,806	4,912	5,020	5,125	5,233	5,34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제6조)

(1) 상임위원 인건비 등(인건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① 인건비

□ 상임위원 인건비는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장인 상임위원(1명)에 대하여 장관급, 상임위원(2명)에 대하여 차관급에 해당하는 보수(연봉액,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함

○ 상임위원 3인의 임기는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은 2032년 6월까지 추계

[표 2] 위원장(장관급) 및 상임위원(차관급) 보수(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위원장(장관급)	145,332	17,040	14,880	1,680	480	162,372
상임위원(차관급)	141,143	13,560	11,400	1,680	480	154,703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의 인건비로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33억 5,600만원으로 추계

[표 3]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 :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위원장 1인	169	172	175	178	182	185	94	1,155
상임위원 2인	321	327	333	339	346	352	179	2,201
합 계	489	499	508	518	528	538	274	3,35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② 기관부담금

-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4억 4,900만원으로 추계

[표 4] 기관부담금: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위원장 1인	22	23	23	24	24	25	12	154
상임위원 2인	42	43	44	45	47	48	24	294
합 계	64	66	67	69	71	73	37	449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③ 자산취득비

- 상임위원 3명(위원장1명, 상임위원 2명)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하여 1인당 502만원으로 가정

[표 5] 자산취득비: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상임위원 3명	15	-	-	-	-	-	-	1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 위원회의 비상임위원(6명) 수당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월 3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억 5,900만원으로 추계
 -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까지 발생하는 것으

로 가정하여 2031년까지 추계

- 비상임위원(6명) 수당(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비)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준용하여 1회당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43	43	43	43	43	43	—	259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 소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수당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진상조사소위원회와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소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월 4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3억 4,500만원 추가재정소요 발생

- 2개의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각각 구성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를 고려하여 1회당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월 4회로 가정하되,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되는 2031년까지 추계

[표 7] 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2개의 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57	57	57	57	57	57	—	34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총 44억 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8] 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상임위원 인건비 등 (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568	565	575	587	599	611	311	3,816	545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43	43	43	43	43	43	—	259	37
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57	57	57	57	57	57	—	342	49
합 계	668	665	675	687	699	711	311	4,417	6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자문기구의 설치(안 제14조)

-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비)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수 등을 준용하여 총 40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수당은 1회당 40만원으로 하며, 연 4회 개최하여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기간인 2031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자문기구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3억 8,4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자문기구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자문기구 설치	64	64	64	64	64	64	—	384	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4조)

- 종합보고서 작성·발간 경비는 추계의 전제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2016년도 종합보고서 등 발간 비용(1억원)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2년 1억 4,0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종합보고서의 작성	-	-	-	-	-	-	140	14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기구를 두며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3,200만원, 2032년 4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2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총 49억 4,100만원(연평균 7억 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위원회의 설치 등	668	665	675	687	699	711	311	4,417	631
자문기구의 설치	64	64	64	64	64	64	-	384	55
종합보고서의 작성	-	-	-	-	-	-	140	140	20
합 계	732	729	739	751	763	775	451	4,941	70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